

〈일반논문〉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대 조약 서술 분석*

최보영**

〈목차〉

- I. 머리말
- II. '개국통상조약' 서술 비교
- III. '침략조약' 서술 비교
- IV. '병탄조약' 서술 비교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근대 시기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조약을 어떻게 서술했는지 비교·분석한 글이다. 한국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대강화' 지침에 의해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 교과서는 많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으려는 분량상의 차이점이 눈에 띈다. 일본 교과서는 자국의 개국조약의 불평등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도 이후 한국과 체결한 다양한 조약을 언급하며 한국 병탄 과정을 조약 체결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게끔 서술하고 있다. 반면 한국 교과서는 강화도조약의 불평등성은 제기하면서도 한국의 식민지와 직결되었던 시모노세키조약이나 포츠머스조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또 을사늑약과 병탄조약에 대한 기술은 보다 분명히 할

* 이 논문은 2021년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용인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주제어

중학교 역사교과서, 조일수호조규, 청일전쟁, 시모노세키조약, 포츠머스조약, 을사늑약, 한국병탄조약

I. 머리말

역사교과서에서 근대 조약 서술은 근대 시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1854년과 1858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미일화친조약·미일수호통상조약¹⁾과 1876년 한국²⁾과 일본이 체결한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는 각각 일본과 한국에게는 최초의 ‘개국통상조약’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본 막부는 중국의 개국과정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의한 강제 개항은 피할 수 있었지만 불평등한 조약의 체결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도리어 일본은 한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개국통상조약’을 강요하였다. 이후 한일 양국

1) 일본 교과서에서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을 모두 일미수호통상조약으로 서술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교과서의 서술방식에 따라 이하 본문에서는 일미수호통상조약으로 표기하였다.

2) 이 시기 한반도에 존재하는 국가의 명칭은 조선과 대한제국이고 한일 양국의 교과서에도 시기에 따라 조선과 한국을 구별해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조선과 대한제국을 ‘한국’이라고 칭한다. 다만 고유명사와 해당 교과서에서 조선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 ‘조선’을 사용하였다.

사이에는 47건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되었다. 양국이 맺은 조약은 처음에는 ‘대등’³⁾한 관계였으나 점진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속방’화하는 과정이었고 이 조약들은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침략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⁴⁾ 그러므로 조약이 갖는 형식상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면 그 내용의 불평등성과 이면에 내재한 불법성과 폭력성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한국 지배를 ‘대등’한 조약체결에 의한 합법적 ‘예속’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나아가 한국의 근대화가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⁵⁾

한편 역사교육에서 중학교는 학문으로써 역사를 처음으로 접하는 아주 특별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또 이 시기에 형성한 역사인식과 이해는 고등학교 교육으로 이어지며 향후 완전한 역사인식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근대 조약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분석·비교하고 그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은 양국의 역사 교육 실상을 파악하고 이와 함께 향후 발전적인 양국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금까지 한국 병탄 과정에서 체결된 각종 조약은 그 중요성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⁶⁾ 이러한 연구성과에 비

3) 유바다(「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17)는 국가간 조약이 모두 ‘평등’을 전제로 체결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으나 당시 한일간 조일수호조규는 적어도 국제법적 지위로서는 ‘평등’ 혹은 ‘대등’한 지위였다고 할 수 있다.

4)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일 조약 자료집(1876~1910)』,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 사이에 체결된 조약 이외에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끼친 조약으로 텐진조약(1884), 시모노세키조약(1895), 포츠머스강화조약(1905) 등 청일·러일 사이에 체결된 조약 역시 적지 않다.

5) 조약의 불법성을 지적한 논문은 대표적으로 이상찬의 연구(「을사조약 반대상소와 5대신의 반박상소에 나타난 을사조약의 문제점」, 『한국근현대사연구』 64, 2013)가 있다.

6) 최덕수 편,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한철호, 『근대 일본은 한국

해 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조약관계가 어떻게 서술되었는가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략하다고 할 수 있다.⁷⁾ 한국병탄과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같은 영토침탈에 대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의 출발점이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우경화하는 일본의 역사교육과 그 문제점에 대해 시대사 서술 분석⁸⁾과 독도 영유권 주장⁹⁾ 및 식민지기 역사왜곡 기술¹⁰⁾ 등 특정 주제에 집중한 연구가 주로 이뤄졌다. 아울러 근대시기 발생한 주요 정치·외교사적 사건에 천착해 깊이 있는 분석¹¹⁾을 수행한 연구는 일본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체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육 현황과 역사왜곡 내용 그리고 역사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시기 제작·배포되어

을 어떻게 병탄했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박한민, 「조일수호조규 체계의 성립과 운영연구」, 고려대박사학위 논문, 2017;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편, 『조일수호조규-근대의 의미를 묻다』, 청아출판사, 2017.

- 7) 김홍수는 일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일본 역사교과서의 강화도조약 기술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35, 2012).
- 8) 시대사 서술 문제를 분석한 연구는 대체로 고대사에 주목하여 이뤄졌다. 서보경,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대 한일관계 기술에 대한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51, 2016; 나행주,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고대사 서술」, 『동국사학』 51, 2011; 연민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고대사상과 역사인식」, 『역사교육논집』 47, 2011.
- 9) 이와 관련해서는 엄태봉(「2020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 분석」, 『比較日本學』 49, 2020)의 최근 연구가 있다.
- 10) 홍종욱, 「일본 역사 교과서의 3·1운동 서술 분석」, 『역사교육』 151, 2019.
- 11) 현명철,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근대사 기술」, 『한일관계사연구』 69, 2020;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 「개항기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의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30, 2008; 서현주 「학습지도요령해설 개정과 2011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근대사 관련 서술-일본의 개국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역사교육논집』 13, 2011; 최영호, 「2011년 검정 통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근대 서술에 나타난 변화와 특징」, 『한일관계사연구』 40, 2011 등의 연구가 있다.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교과서를 대등하게 비교·분석한 연구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물론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근대 한일관계 서술을 ‘조약’에 주목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도형은 근대적 한일 관계가 이뤄지는 조일수호조규부터 병탄까지 양국이 체결한 조약에 대해 양국 교과서가 바라보는 관점을 한국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의 침략성과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이 강조되었고 일본은 합법성의 측면에서 서술되었다고 보았다.¹²⁾ 이는 곧 제국주의 침탈과 식민지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엄태봉이 2022년 현행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하기는 했으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대해 집중·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조약관계에 대한 인식까지 밝히지는 못하였다.¹³⁾

이처럼 조약은 양국 관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근대 한국이 일제에 의해 병탄되는 절차상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내용과 이에 대한 서술 그리고 그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특히 조약을 다루는 교과서 서술은 자칫 학생들에게 양국관계의 평등성, 합법성에 대한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서술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일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조약으로는 개국조약으로 일미수호통상조약과 조일수호조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있다. 또 1880년대의 제물포조약과 한성조약, 텐진조약이 있으며 90년대에는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조약(삼국간섭) 및 한청통상조약이 있다. 마지막으로 1900년대 실질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이징표라

12) 김도형,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 한일관계와 조약’ 서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2010.

13) 엄태봉, 「현행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대 한일 관계 인식-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78, 2021.

고 할 수 있는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 정미7조약(제3차 한일협약) 그리고 병탄조약이 있다. 이들 조약을 ‘개국조약’, ‘침략조약’, ‘병탄조약’으로 구분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근대화와 병탄에 근간이 되었던 일련의 조약에 대해 양국의 교과서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양국 각각의 ‘개국조약’의 서술과 의미 부여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시모노세키조약과 포츠머스조약 등 ‘침략조약’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을사늑약을 포함한 ‘병탄조약’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할 것이다.

II. ‘개국통상조약’ 서술 비교

1. 일미화친조약·일미수호통상조약

1858년 일미수호통상조약은 일본이 미국과 맺은 최초의 통상조약으로 1854년 맺은 일미화친조약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미화친조약이 포경선 등의 중간 보급기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의 조약이라면 일미수호통상조약은 일본이 미국에게 개항과 통상을 허락하여 서구 근대 조약 체제에 정식으로 편입된 조약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그 조약 내용은 불평등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본 최초의 ‘통상조약’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일본의 모든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이 조약을 화친조약보다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우선 이 조약의 체결과정과 그 의미를 인용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일본 교과서의 일미수호통상조약 서술

출판사명	내용	쪽수
도쿄서적	1858년 조정의 허가를 얻지 않을 채 일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략) 조약의 내용은 미국에게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게 관세자주권이 없는 등 불평등한 것이었습니다.	163쪽
제국서원	게다가 미국은 막부에 대해 무역의 자유화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막부의 大老 이이 나오키는 1858년에 일미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중략) 이 조약의 내용은 관세자주권이 없고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는 등 불평등한 측면이 있고 메이지시대가 되어 커다란 외교문제가 되었습니다.	164~165쪽
교육출판	1858년 막부의 판단으로 일미수호통상조약을 맺고(중략) 하지만 이 조약은 외국인의 범죄는 그 나라의 영사가 재판하고, 영사재판권을 인정(치외법권)하고 수입품의 관세율을 결정하는 권리(관세자주권)가 일본에게 없는 등 일본에게 불리한 불평등조약이었습니다.	161쪽
일본문교출판	1858년 6월 조정의 허가가 없는 채 일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중략) 이 조약은 일본에서 법을 어긴 외국인을 그 나라의 영사가 재판하는 영사재판권을 인정(치외법권)하고 수입품의 관세율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자주권을 일본에게 인정하지 않는 등 일본에게 불평등한 것이었습니다.	175쪽
이쿠호사	여기서 막부의 대로 이이 나오키는 조정의 허가를 얻지 않고, 1858년 일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은 청이 영국과 맺은 불평등조약과 같은, 일본에는 관세자주권이 없는, 외국에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등 우리나라에게 불평등한 내용이었습니다.	171쪽
야마가와출판	이 압력에 제압당한 대로 이이 나오키는 조정의 허가를 얻지 않을 채, 1858년에 일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는 무역항으로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를 개항하는 것과 무역은 막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자유무역으로 하는 것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일본국내에서 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사가 미국의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고 또 무역을 행할 때의 세금(관세)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권리(관세자주권)가 일본에 인정받지 못하는 등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을 가진 불평등조약이었습니다.	167쪽
마나비사	1858년 대로 이이 나오키가 반대의견을 누르고, 막부는 일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서 무역항으로 5개 항을 열고 거류지에 한해 자유 무역을 인정했습니다.(중략) 이들 조약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 외국인의 범죄는 외국의 영사가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재판하게 되었습니다(영사재	151쪽

판권). 또 일본 측이 수입품의 관세율을 결정하는 권리(관세자주권)은 없고, 협정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된 이 조약의 개정이 이후 외교의 큰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

이들 교과서는 막부의 大老였던 이이 나오키(井伊直弼)에 의한 일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비판적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한결같이 일본 교과서는 미국의 무력에 압도당해 버린 막부가 제대로 된 논의나 대응없이 많은 반대가 있었고 또 조정의 허가를 얻지 않았음에도 독단적으로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즉 막부가 조약 체결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막부는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끔 서술하고 있다. 막부에 대한 비판적 서술은 후에 일어나는 메이지유신의 전제로써 이이 나오키로 대표되는 막부의 무능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셈이다. 이러한 서술은 특정 역사적 집단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가 평가 혹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렇게 체결된 일미수호통상조약의 의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영사재판권 인정과 관세자주권의 상실로 대표되는 불평등조약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국제관계의 '평등성'이 현대 국제사회에도 중요하게 인식되도록 서술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제국서원은 불평등조약 문제가 후에 외교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외교문제는 이와쿠라사절단이 파견되어 조약개정을 시도하였다는 사실과 연결되면서 불평등문제가 일본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서술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일본 교과서는 일본의 개국조약인 일미수호통상조약에 대해 모든 교과서가 막부의 무능에 의한 독단적 처리로 체결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개국 자체가 다수의 지지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무능한 소수의 막부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한국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개국조약에 대해 언급한 교과서는 거의 없다.¹⁴⁾ 일본은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던 개국 조약의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개정하고자 했음에도 한국에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한 것이다.¹⁵⁾ 이러한 이율배반적 일본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교과서에 일본의 개국조약에 대한 서술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일본은 1842년 청국이 영국에 의해 강제로 개국한 지 12년 뒤인 1854년 미국에 의해 강제로 개국하였다. 또 한국은 일본이 개국한 지 22년 만인 1876년에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국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개항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1871년 7월 청국과 청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이 조규 제1관에는 “양국에 屬한 邦土도 각자의 禮로써 서로 대하고 조금이라도 侵越할 수 없으며 영구히 안전하게 할 것”¹⁶⁾ 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일본에게는 ‘소속방토’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여부가 중요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조약을 통해 한국의 속국여부가 명확해지지는 않았으나¹⁷⁾ 이 조약을 통해 청일 양국이 대등하고도 평등한 조약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약이었다.

14) 리베르스쿨이 “이 무렵 일본은 미국에 문호를 개방”하였다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을 뿐이다(156쪽).

15) 한철호, 「개항기 일본의 치외법권 적용 논리와 한국의 대응」, 『한국사학보』 21, 2005, 180쪽.

16) 『日本外交文書』 4권, #153, 204쪽.

17) 유바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17, 98쪽.

[표] 일청수호조규

출판사명	내용	쪽수
도교서적	신정부는 1871년 조선이 조공하는 청과 대등한 내용의 조약(일청수호조규)을 맺고 조선과의 교섭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77쪽
제국서원	신정부는 1871년 청과 대등한 조약인 일청수호조규를 맺고 정식으로 국교를 열고, 영사재판권을 상호 인정했습니다.	178쪽
교육출판	정부는 1871년 청과 대등한 일청수호조규를 맺고 국교를 열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우선 쓰시마번을 통해 왕정복고를 알리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쇠국을 이어가고 있던 조선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75쪽
일본문교출판	1871년 청과 치외법권을 상호 인정하는 등 대등한 지위를 정한 일청수호조규를 맺었습니다.	191쪽
이쿠호사	정부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우위에 서고 싶은 사정도 있고 조선이 조공하고 있던 청과의 사이에서 1871년 일청수호조규를 맺어 국교를 열었습니다. 서로에게 영사재판권을 약속하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조약입니다.	183쪽
야마가와출판	정부는 근린제국과의 사이에 새로운 외교관계를 다시 맺었다. 우선 1871년 청과의 사이에서 일청수호조규를 맺었다. 이 조약은 상호 개항하고 영사재판권을 약속하는 등 일본이 최초로 맺은 대등한 조약이었다.	183쪽
마나비사	에도시대, 일본과 청과는 나가사키에서 교역하고 있었지만 정식 외교는 없었습니다. 양국은 1871년 일청수호조규를 맺고 평등한 외교관계를 약속했습니다.	177쪽

일청수호조규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조약이 대등하고 평등하게 체결되었다는 점과 둘째, 조약의 명칭이 앞선 일미수호통상조약의 조약과 달리 조규라는 점이다. 이 부분을 서술할 때 교과서들 대부분은 ‘신정부’ 혹은 ‘정부’임을 주어로 내세우고 있는데 신정부는 막부를 타도하고 새롭게 수립된 메이지정부를 의미한다. 신정부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동아시아의 강국인 청국과 대등한 조약을 체결한 주체임을 강조하는 듯하다. 또 신정부가 체결한 최초의 조약인 일청수호조규는 막부가 서양과 맺은 조약과 달리 영사재판권 혹은 치외법권 등을 상호 인정하는 쌍무적이고 평등한 조약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막부에 대해 철차

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비판적이었던 것과 정반대의 뉘앙스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 교과서는 일본의 개국조약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언급한 교과서는 없다.

이와 달리 한국의 개국조약에 해당하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에 대해서는 양국 교과서 모두 다루고 있다. 조일수호조규 체결의 서사는 대체로 강화도사건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표] 일본교과서의 운요호사건과 조일수호조규

출판사명	내용	쪽수
도쿄서적	일본은 조선과 교섭을 계속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는 1875년 강화도사건을 구실로 이듬해 조선과 조약(일조수호조규)을 맺고 힘으로 조선을 개국시켰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일본만이 영사재판권을 갖는 등 일본이 구미제국으로부터 당한 불평등조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77쪽
제국서원	그런데 1875년에 일본은 군함을 조선의 연해에 파견하고 무단으로 측량을 행하는 등 압력을 가했습니다. 조선 측이 강화도에 접근했던 일본의 군함을 공격하는 사건(강화도사건)이 일어나자, 이듬해 76년 이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조선과 일조수호조규를 맺고 개항시켰습니다. 이는 일본이 일방적인 영사재판권을 갖는 등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179쪽
교육출판	1875년 강화도사건이 일어나자 이듬해 정부는 조선에 압력을 가해 일조수호조규를 맺고 조선을 개국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규정하고 그때까지의 청과 조선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일본에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등 불평등한 것이었습니다.	175쪽
일본문교출판	쇄국을 계속하던 조선에 대해서는 1875년 일본이 군함을 파견하고 서울 근해의 강화도 부근을 무단으로 측량한 것을 계기로 조선 측이 포격했다고 하는 사건(강화도사건)이 일어나자 이듬해 76년 이 사건을 구실로 일조수호조규를 맺어 개국시켰습니다. 이 조약은 일본만이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등 일본 측에 유리한 최초의 불평등조약이 되었습니다.	191쪽
이쿠호사	정부는 그 후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조선 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력을 배경으로 조선에게 개국을 요구하려는 소위 정한론이 제창되었습니다. 1875년 조선 연안에서 측량 중인 일본의 군함이 포격당하는 강화도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교섭하였고 이듬해 일조수호조	183쪽

	규를 뺏어 개국시켰습니다.	
야마가와 출판	1875년 일본이 조선반도 연안에 군함을 파견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강화도사건).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게 개국을 강요하였고 이듬해 일조수호조규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영사재판권과 관세의 면제를 인정받는 등 조선에게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183쪽
마나비샤	1875년 일본의 군함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한강 부근을 측량해서 포격을 받은 것을 구실로, 조선의 강화도 포대를 공격했습니다. 이듬해 일본은 조선에 압력을 가해, 일조수호조규를 맺었습니다. 이 조약은 조선은 독립국으로 하여 청과 조선의 관계를 부정하고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77쪽

우선 일본 교과서가 강화도사건과 조일수호조규를 서술한 방법은 교과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용어는 모두 '강화도사건'과 '일조수호조규'를 사용하고 있다.¹⁸⁾ 한국 교과서가 운요호사건이라고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그런데 이 강화도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도쿄서적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교섭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을 언급했고, 제국서원·일본문교출판·이쿠호샤·마나비샤 등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한국의 연안을 측량하자 이에 대응해 한국이 포격을 가하면서 강화도사건이 일어났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강화도사건의 배경에 일본의 불법적인 연안 측량을 제시한 것이다.

또 이쿠호샤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조일수호조규의 불평등성을 언급하고 있다. 영사재판권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성에 대한 일본 교과서의 서술은 일정한 흐름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비록 일본은 서양과 맺은 개국 조약에서는 불평등조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 중 최고 강국이었던 청과는 평등한 조약을 체결했는데도 한국을 개국시키는 조약에서는 일본이 우위에 서는 불평등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스스로

18) 마나비샤의 경우, '강화도사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일본의 군함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측량한 불법성을 강조한 특징이 있다.

서양에게 침해당한 독립국으로써의 치욕을 한국에 강요함으로써 국제적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기술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도리어 자국이 타국에게 당했던 불평등성과 불합리성을 약소국인 한국에 강요했다는 자가당착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

한편 한국 교과서는 모든 교과서가 ‘강화도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개국조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 조약의 성격에 대해서 일본 교과서의 개국조약과 마찬가지로 모두 불평등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표] 한국 교과서의 강화도조약

출판사명	내용	쪽수
동아	홍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통상개화를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박규수 등의 통상 개화론자들도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자, 조선 정부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문호를 열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68쪽
리베르스쿨	1873년에 홍선대원군이 물러나면서 조선의 대외 정책이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은 강화도조약을 맺어 일본에 최초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서양의 여러 나라와 수교하였다. 이로 인해 서양 문물과의 접촉이 활발해 지고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156쪽
	강화도조약은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청의 간섭을 막고자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은 일본에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열어주고 해안측량권과 영사재판권을 허용하였다.	168쪽
천재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조선 정부는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중략)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통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하였다(1876).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허용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173쪽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불평등한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였다. 강화도 조약에 따라 조선은 부산 외	184쪽

19) 青山治世, 『近代中國の在外領事とアジア』, 名古屋大學出版會, 2014, 4쪽.

	에 2개 항구를 열어주고, 해안 측량권과 치외법권을 허용하였다.	
미래엔	19세기 초 열강들은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통상 수교를 거부하였으나, 그가 물러난 이후 1876년 일본의 강요로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176쪽
	강화도조약은 일본의 강요로 체결되어 조선에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어”	177쪽
비상교육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된 고종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완화하였다. 이 무렵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에 통상 수교를 강요하였다. 결국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였다(1876).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여러 나라와도 수교하였다. 이때 맺은 조약들은 모두 조선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175쪽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맺어 개항하였다.	187쪽
지학사	이 무렵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정변이 일어나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일본의 새 정부는 운요호사건을 일으켜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였다. 마침 개항의 필요성을 느끼던 조선 정부도 이에 응해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 1876)을 체결하고, 인천 등의 항구를 개항하였다. 강화도조약은 치외법권과 연안 측량권 등을 허용한 불평등 조약이었으나,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175쪽
금성	조선은 강화도조약(1876)을 시작으로 여러 조약을 맺으며 근대적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근대 조약들은 정치·경제적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요소들을 담고 있었다.	156쪽
	청과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속에서 개항하여 여러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156쪽

한국의 개국조약에 대해 일본 교과서는 모두 ‘일조수호조규’라는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교과서는 대부분 ‘강화도조약’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약의 조약문 상 명칭은 ‘修好條規’이다.²⁰⁾ 당시 양국은 편의상 자국을 앞세운 조일수호조규 혹은 일조수호조규를 그 정식명칭으로 사용하는데도 한국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강화도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것이다.²¹⁾ 사실

20)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2월 3일; 『일본외교문서』 9권, #26, 114쪽.

강화도조약은 강화도에서 맺은 지역성을 제외하고는 이 조약이 갖는 특수성을 전혀 알 수 없는 명칭이다.

하물며 이 조약은 일반적인 ‘조약’이 아니라 ‘조규’이며 조약과 조규는 명백히 같지 않다는 점이다.²²⁾ ‘조규’라는 명칭에는 일본이 한국과 근대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서도 전통의 회복 즉 ‘舊好重修’라는 명분을 한국 측에 제공함으로써 한국 내에 일어날지도 모를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이 조약의 근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전통적 인식의 연장으로 이 조약을 이해한 결과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²³⁾ 즉 조약과 조규의 차이를 통해 양국의 인식과 조약체결 의도가 드러나는만큼 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청국이 체결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하지만 모든 교과서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국과 일본은 1871년 같은 아시아권 국가와 맺은 청일수호통상조약에서 영사재판권을 쌍무적으로 규정했으면서도 이보다 5년이나 지난 뒤에 체결한 조일수호조규에서는 양국 모두 한국에 대해 편무적인 영사재판권만 인정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 강요했던 것과 같은 방식과 내용을 일본이 한국에도 고스란히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²⁴⁾

또 개항 시기와 관련하여 대체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정책에 대해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기를 늦추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리베르

21) 지학사와 비상교육만이 조일수호조규를 병기 혹은 별도로 기재할 뿐이다.

22) 이민규, 「조규? 조약!」, 『역사비평』 75, 2006, 278쪽.

23) 한국 정부가 조일수호조규의 근대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878년부터 발생한 두모진 수세사건이 분기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76년 8월 무관세를 규정한 조일무역규칙 체결 이후 한국은 일본에게 원산을 개항한 이후인 1883년에 새로이 관세를 규정하는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및 동(同) 해관세칙(海關稅則)」을 체결할 수 있었다.

24) 靑山治世, 『近代中國の在外領事とアジア』, 2014, 185쪽.

스쿨, 156쪽),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천재, 172쪽), “이로 인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었다”(지학사, 174쪽) 등으로 서술되어 있다. 늦은 개항이 근대 문물 수용의 지연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것이 향후 한국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뉘앙스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시기가 늦었다는 단순한 사실 한 가지만으로 ‘능동성’을 규정하기엔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일본은 중국보다 12년이나 늦게 개항했다는 사실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Ⅲ. ‘침략조약’ 서술 비교

1.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조약

1894년 일본이 일으킨 청일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으로,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서 청국세력을 몰아내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시모노세키조약은 이를 국제사회에서 공표하는 절차였다. 일본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 제1관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일방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시모노세키조약 제1조에서 “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받은 것이다. 이로써 갑신정변 이후 노골화한 청국의 한국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임과 동시에 일본의 독점적이고 완전한 간섭에 들어선 것이다. 즉 청일전쟁은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에도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는 이에 대한 서술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다. 일본 교과서는 모두 시모노세키조약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한국 교과서는 이를 세계사의

한 장면처럼 표시하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교과서도 존재한다.²⁵⁾

[표] 일본교과서의 시모노세키조약

출판사명	내용	쪽수
도쿄서적	조선정부는 청에 출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일본도 조선에 출병했기 때문에 일본과 청의 군대가 충돌해 7월 일청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군은 우세하게 싸움을 이끌어 1895년 4월에 시모노세키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에서 청은 (1) 조선의 독립을 인정 (2) 요동반도, 대만, 평후제도를 일본에 양보 (3) 배상금 2억냥을 지불하는 것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188쪽
제국서원	갑오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정부가 청에 원군을 요구하자 일본도 청에 대항해 조선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농민군은 조선정부와 화해했지만, 일본은 조선정부에게 개혁을 요구하고 조선왕궁을 점거하는 등의 간섭을 했습니다.(중략) 1894년 7월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과 청의 해군이 충돌하고 일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중략) 이듬해 95년 4월 시모노세키에서 이청강화조약(시모노세키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청에게 조선의 독립을 인정케 하고, 요동반도, 대만, 평후열도와 2억냥의 배상금을 얻었습니다.	192~193쪽
교육출판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조선정부의 요구에 응해서 청이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출병하여 일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략) 1895년 시모노세키에서 열렸던 강화회의에서 시모노세키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청은 일본에게 조선의 독립, 요동반도, 대만, 평후제도의 양도, 배상금 2억냥의 지불 등을 인정했습니다.	188쪽
일본문교출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정부가 청에 원군을 요청하자, 청과의 조약을 이유로 일본도 조선에 출병하였고 일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략) 이듬해 시모노세키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화회의에서 맺어진 시모노세키조약에는 근대의 국제법에 원칙에 입각해 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하고 조공해 왔던 조선의 왕을 청의 황제가 조건국왕에 임명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관계를 끊을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또 요동	204쪽

25) 금성, 리베르스쿨, 미래엔은 단원 앞머리에 한국사와 세계사를 구분한 연표를 덧붙여 두고 있는데 '청일전쟁'을 세계사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다. 동아는 본문 옆 날개 글에 짙막하게 소개하고 있다. 천재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했다는 표현을 썼을 뿐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비상과 지학사만이 본문에서 청일전쟁을 포함시켰다.

	반도, 대만 등을 일본에게 넘길 것, 2억냥의 배상을 지불할 것, 구미제국과 맺고 있던 불평등조약을 일본과도 맺을 것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쿠호사	청은 조선의 요구에 따라 「속국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출병했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출병했기 때문에 양국은 충돌하였고 일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중략) 1895년 시모노세키강화회의가 열려 우리나라는 청과 시모노세키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에는 조선이 청의 속국이 아니며, 독립국이라는 것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비로소 중국으로부터 독립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청은 요동반도와 대만 등을 일본에게 넘겨준과 함께 다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에도 동의하였습니다.	197쪽
야마가와 출판	1894년에 감세와 배일을 요구하는 농민 반란(갑오농민전쟁, 동학란)이 일어났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청은 조선정부의 요청을 받아 일본에 통지하고 출병하였고 청에 대항해서 일본도 출병했다.(중략) 일영통상항해조약에 조인해서 일본을 지지하자 끝이어서 일본군은 청군에게 공격을 개시해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중략) 1895년 4월 일본의 전권 이토 히로부미, 무쓰 무네미쓰와 청의 전권 이홍장은 시모노세키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서 청은 (1) 조선의 독립을 인정 (2) 요동반도, 대만, 평후제도를 일본에 양도 (3) 배상금 2억냥을 일본에 지불하는 등이 결정되었다.	194쪽
마나비사	1894년 7월 23일 새벽, 일본군은 조선왕궁의 문을 파괴하고 돌입해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국왕을 감금한 일본군은 청을 쫓던 조선정부를 쓰러뜨리고 일본의 말을 듣는 정부를 만들었습니다.(중략) 청은 일본과 전쟁에서 패해, 1895년 4월 양국은 시모노세키조약을 맺었습니다. 청도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또 요동반도와 대만, 평후제도를 일본령으로 하고 2억냥의 배상금을 일본에 지불할 것을 인정했습니다.	184~185쪽

우선 청일전쟁의 원인에 대해 일본 교과서는 한결같이 ‘갑오농민전쟁’과 이에 따른 일본군의 한국 출병을 들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국권 침탈 야욕이 청일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동인이었고 그 중 경북궁점령과 청일전쟁이 그 첫걸음이라는 사실이다.²⁶⁾ 대부분 교

26) 조재근, 「1894년 일본군의 조선왕궁(경복궁) 점령에 대한 재검토」, 『서울과 역사』 94, 2016.

과서는 청일전쟁의 배경으로 갑오농민전쟁과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국에 원병을 요청한 사실, 그리고 청군의 출병과 동시에 일본군의 출병을 들고 있다. 텐진조약에 의해 양국의 출병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적인 출병이 아니었던 만큼 일본의 자의적 출병이었다는 사실은 적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농민 ‘반란’이 청일전쟁의 궁극적 원인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청일전쟁 직전의 제1차 봉기에서 동학농민군은 철저히 내정 개혁을 요구했으며 이는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였다.

그 뿐만 아니라 청군과 일본군이 출병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농민군은 전주화약을 맺고 자진철회했으므로 이들을 청일전쟁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국서원에서든 언급했듯 “농민군은 조선정부와 화해”했기 때문에 양군의 출병 원인은 해소되었다. 그럼에도 일본 교과서는 일본군의 출병이 청군의 출병에 기인하고 청군의 출병은 한국 정부의 청병에 기인했지만 청병의 요인이 해소된 만큼 동학농민혁명이 청일전쟁의 원인인 것처럼 서술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한국 교과서는 다음의 표와 같이 간략하게 이 시기를 서술하고 있다.

[표] 한국 교과서의 청일전쟁 서술

출판사명	내용	쪽수
동아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영향력이 강화되자 김홍집을 중심으로 친일내각이 구성되었다. (중략) 청일전쟁에서 우세해진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적극 개입하였다.	170쪽
리베르스쿨	이후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내정을 간섭하자, 농민군은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하여 한성으로 진격하였다.	157쪽
천재	동학 농민 운동 중에 조선에 파병된 일본군은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170쪽
	청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 상인은 조선 상인의 저항과 청 상인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조선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184쪽

미래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조선의 내정에 더 깊이 간섭하였다.	176쪽
비상교육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우세해지자 조선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176쪽
지학사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청일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농민군은 다시 봉기하였으나 공주 우금치에서 정부군과 일본군에 패하였다.	176쪽
금성	농민군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하였다.	157쪽

모든 교과서가 청일전쟁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 전쟁의 배경과 성격 등에 대해서 언급한 교과서는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한국인이 많은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²⁷⁾ 이를 위해서는 청일전쟁의 배경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다뤄주어야 할 것이다.

2. 러일전쟁과 포츠머스조약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이 청국으로부터 한국의 침략을 승인한 것이라면 러일전쟁과 포츠머스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남만주와 한국에 대한 직접 지배를 확인받았고 사할린 남부의 할양을 약속받은 것이다. 1904년 러일전쟁은 청일전쟁으로 얻어낸 요동반도를 러시아·프랑스·독일의 간섭에 의해 빼앗긴 이후 치욕을 갚기 위한 상징성도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서양의 세력 재편이 이뤄졌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즉

27) 김도형,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 한일관계와 조약' 서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 82쪽.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과 남하정책에 대해 이를 견제하려는 영국, 미국 등의 열강이 러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을 지원하면서 세력균형이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하지만 열강의 세력 균형에 주목받지 못한 한국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최종승인을 받게 되었다.

[표] 일본교과서의 포츠머스조약 서술

출판사명	내용	쪽수
도쿄서적	일본이 1905년 5월 일본해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미국의 중개에 의해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강화회의가 열려 9월에 포츠머스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러시아는 (1)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 (2) 여순과 대련의 조차권, 장춘 이남의 철도이권 (3)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일본에게 양보할 것 등을 인정했습니다.	191쪽
제국서원	이를 계기로 미국의 중개에 의해 미국에서 일러강화조약(포츠머스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조약에는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받고, 일본은 장춘, 여순 사이의 철도 이권과 여순, 대련을 중심으로 하는 요동반도의 조차권, 남 가라후토 등을 러시아에게 얻었습니다.	195쪽
교육출판	일본정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강화의 주선을 요구했습니다. 1905년 9월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강화회의가 열려, 포츠머스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권, 요동반도의 조차권과 남만주철도의 권익을 일본에게 넘길 것, 사할린의 남부를 일본의 영토로 하는 것 등을 인정했습니다.	193쪽
일본문교출판	1905년 미국의 중개로 강화회의가 열려 포츠머스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조약에는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 가라후토의 남부와 러시아가 청에게 빌린 여순, 대련 계다가 러시아가 문자에 건설하고 있던 철도의 일부와 탄광 등을 일본에게 넘길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207쪽
이쿠호샤	1905년 미국의 중개로 포츠머스조약이 맺어져 우리나라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 조약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에서의 우월적 입장을 인정받은 것 외에 여순, 대련의 조차권, 장춘 이남의 철도 권리, 북양의 어업권, 가라후토의 남반부를 얻었습니다.	199쪽

28) 박희성, 「러일전쟁 기간 국제관계와 한국-포츠머스 조약을 중심으로-」, 『사총』 75, 196쪽.

야마가와 출판	하지만 일본의 전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여기서 일본은 1905년 9월 미국의 중개에 의해 고무라 주타로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포츠머스조약)에 조인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1)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도, 감독권을 인정 (2) 청의 영토 내 여순, 대련의 조차권과 장춘 이남의 철도 및 그 부속하는 권역 (3) 가라후토(사할린)의 남반부 등을 일본에 할양 (4) 연해주와 캅차가연안 부근에서 일본의 어업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배상금 지불은 인정받지 못했다.	197쪽
마나비사	1905년 미국 대통령의 중개로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머스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일본은 이 조약에서 조선반도의 우월권을, 러시아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또 러시아는 요동반도의 여순, 대련을 중국에게서 조차하는 권리와 장춘부터 남쪽의 철도(후의 남만주철도), 남가라후토 등을 일본에게 양보했습니다.	189쪽

모든 교과서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결같이 “미국(대통령)의 중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 야마가와출판을 제외하고 모든 교과서가 한국에 대한 ‘우월권’을 인정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물론 야마가와출판은 우월권의 다른 표현인 “일본의 지도, 감독권”을 인정받았다고 했을 뿐 맥락상 모든 교과서가 한국을 전장으로 삼아 벌어진 러일전쟁 결과,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의 중개에 의해 전쟁이 끝났고 그 결과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공식 확인 받은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국은 엄연히 주권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응과 입장에 대한 서술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한국 교과서는 청일전쟁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상당히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포츠머스조약을 성사시킨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한국의 식민지화를 앞당긴 포츠머스조약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양면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룰 가치가 있다.

[표] 한국교과서의 러일전쟁 서술

출판사명	내용	쪽수
동아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에서 필요한 시설과 지역을 이용하기 위해 대한 제국에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였다.	171쪽
리베르스쿨	일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한국을 식민지로 재편하기 시작하였다.	158쪽
천재	러일 전쟁과 일본군의 주둔으로 국권이 위태로워지자	174쪽
	러일 전쟁 당시 일제가 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막대한 국유지를 빼앗으려 하자, 보안회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철회 시켰다.	184쪽
미래엔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인 러일전쟁에서 승리 (중략) 러일전쟁 중에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였다.	178쪽
비상교육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대립하던 일본은 러시아를 공격하였다(러일전쟁, 1904)	179쪽
지학사	아관파천을 계기로 세력이 위축된 일본은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177쪽
금성	일본은 대한 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으킨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였다.	159쪽

청일전쟁과 마찬가지로 러일전쟁 역시 한반도가 전장이 되었고 포츠머스조약 체결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등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²⁹⁾ 청일전쟁이 교과서에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러일전쟁은 모든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이가 있지만 종전을 이끈 포츠머스조약과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에 대한 서술은 부족해 보인다. 다만 러일전쟁이 일본의 한반도(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다거나 혹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이라는 측면이 서술됨으로써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을 뿐이다.

29) 최문형,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 병합』, 지식산업사, 2005, 3쪽.

IV. ‘병탄조약’ 서술 비교

1. 을사늑약

1876년 일본은 조일수호조규를 통해 한국을 ‘자주국’으로, 1895년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한국을 ‘청국으로부터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으로, 1905년 포츠머스조약을 통해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우월권’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약은 모두 1910년 한국 병탄으로 귀결되는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로써 우선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을사늑약을 강요했는데 한일 양국의 교과서는 거의 대부분 이에 대해 거론하고 있으면서도 그 표현과 뉘앙스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을사늑약에서 중요한 점은 조약 체결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의미의 ‘늑약’이라는 표현과 이 조약에 의해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으며 이를 계기로 점차 한국의 내정을 일본이 불법적으로 장악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표] 일본교과서의 을사늑약 서술

출판사명	내용	쪽수
도쿄서적	일러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05년에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보호국으로 하고 한국통감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초대 통감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했습니다.	192쪽
제국서원	1905년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빼앗아 보호국으로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통감으로 삼아 파견하였습니다.	196쪽
교육출판	일본은 포츠머스조약을 맺고 이어서 한국을 보호국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고 한국에 통감부를 두어 통감이 외교를 감독하였습니다.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194쪽

일본문교출판	일러전쟁 후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고 보호국으로 일본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통감부를 개설해 초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를 취임시켰습니다.	208쪽
이쿠호샤	포츠머스조약에서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후 일한협약에 따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한국통감부를 두어 초대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였습니다.	201쪽
야마가와출판	일러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은 한국에 압력을 강하게 하였다. 일러전쟁 후에는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보호국으로 하였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한국통감으로 취임했다. 일본은 이어서 한국 내정권을 장악하고 한국군도 해산시켰다.	198쪽
마나비샤	이어서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보호국으로 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승리에 의해 민족독립운동이 활발해졌지만, 일본은 식민지와 세력범위를 구미제국과의 사이에서 상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189쪽

일본 교과서에서는 이 조약과 관련해 세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을사늑약 체결과 그 강제성을 언급한 교과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둘째, 늑약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갔다고 표현한 점이다. 외교권을 빼앗는 과정과 절차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아 조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셋째, 일본의 외교권 강탈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 또는 ‘보호권’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도교서적은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를 생각했고 이를 위해 외교권을 빼앗아 한국을 보호국화 하겠다고 하였다. 또 교육출판과 이쿠호샤 등은 러일전쟁 이후 포츠머스조약 체결과 동시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시간에 따른 나열만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교권이 ‘보호국’화의 전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식민지화의 강압성과 강제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서술이다. 오직 마나비샤만이 이에 대해 아시아인들의 “민족독립운동이 활발해”졌다는 서술을 통해 외교권 강탈의 부당성을 한국민의 대응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외에도 일본의 모든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조약에 정확한 명칭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종실록』에는 「한일협상 조약」이라고 명시³⁰⁾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작 조약문에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³¹⁾

반면 모든 한국 교과서는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통해 조약 체결의 강제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출판사명	내용	쪽수
동아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늑약을 체결(1905)함으로써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171쪽
리베르스쿨	1905년에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빼앗고	158쪽
천재	을사늑약 체결을 전후하여 일제의 경제 침탈이 본격화하자,	184쪽
미래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158쪽
비상교육	이 전쟁(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1905) 대한 제국의 외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 전반을 간섭하였다.	179쪽
지학사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1905).	177쪽
금성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국정 전반을 간섭하였다(을사늑약, 1905)	159쪽

을사늑약은 을사년에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뜻이다. 일본 교과서에서 사용한 ‘보호’라는 단어는 늑약 제1조에서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과 이익을 보호”³²⁾ 한다는 것 때문인데 이는 외교권이 없는 한국정부가 자

30) 『고종실록』 46권, 고종42년(광무9년) 11월 17일조.

31) 이 조약은 조약 원본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을사보호조약」, 「한일협상조약」, 「한일신협약」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최덕수 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635쪽).

32)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일 조약 자료집(1876~1910)』, 동북아역사재단, 2020, 683쪽.

국민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정부가 한국민에 대한 보호권을 갖는다는 것일 뿐 한국 전체를 ‘보호국’으로 삼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교과서는 이러한 내용설명없이 포츠머스조약 이후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수순으로 보호국으로 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한국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서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교과서는 외교권 강탈을 강조하는 녹약을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으나 미래엔의 경우 녹약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며 일본 교과서와 비슷한 서술을 하고 있다.³³⁾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2. 병탄조약

1910년 8월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1910년 병탄조약은 한국의 식민지화 즉 노예화를 의미한다. 을사늑약과 함께 조약 체결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언급한 교과서는 전혀 없고 을사늑약 서술에서 강제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병탄조약에서는 절차의 강압성마저 배제한 채 서술하고 있다.

[표] 일본교과서의 병탄조약 서술

출판사명	내용	쪽수
도쿄서적	1910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했습니다(한국병합). 한국은 「조선」으로, 수도 한성(서울)도 「경성」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2쪽

33) 한국 역사교과서에서 ‘보호국’이라는 표현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제5차 교육과정기 간행된 『고등학교 국사(하)』이다(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교과서 속 우리역사, 검색일: 2022년6월29일). 당시 국정 교과서는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국서원	1909년에는 이토가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듬해 10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고 식민지로 하였습니다(한국병합).	196쪽
교육출판	일본은 그 저항을 제압하고 1910년 한국을 영유해 조선이라고 개칭했습니다. 이것을 한국병합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조선에 조선총독부를 두고 무력을 배경으로 식민지 지배를 시행하였습니다.	194쪽
일본문교출판	1909년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민족운동가 안중근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한국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한국병합이라고 합니다. 병합에 의해 한국은 조선으로 개칭되었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습니다.	208쪽
이쿠호샤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서 한국인 안중근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10년 정부는 한국병합을 결정하고 그 통치를 위해 조선총독부를 두었습니다. 구미열강에서도 조선반도의 문제로 일본에 간섭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201쪽
야마가와출판	1909년에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인 안중근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10년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의 동의를 얻자마자 이어서 한국을 병합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국은 조선으로 개칭되었고 그때까지 수도였던 한성(현재 서울)은 경성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본은 경성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해 군사력을 배경으로 통치를 해나갔다.	198쪽
마나비샤	1910년 8월,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여 한국을 조선으로 개칭해 식민지로 하였고, 조선총독부라는 관청을 두었습니다.	192쪽

특히 제국서원, 일본문교출판, 이쿠호샤, 야마가와출판 등은 병탄 이전에 있었던 안중근 의거를 한국 병탄의 배경인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병탄의 불법성보다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암살로 인해 결과적으로 병탄이 되었다는 식의 서술은 문제점이 있다.

한국 교과서는 을사늑약 체결로 외교권을 빼앗겼다는 사실과 함께 곧바로 병탄을 설명하고 있다. 1905년과 1910년 사이에 있었던 헤이그만국평화회의나 이를 빌미로 한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정미7조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표] 한국 교과서의 한국병탄 서술

출판사명	내용	쪽수
동아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반발하여 의병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결국 일본은 대한 제국을 강제로 병합하였다(1910.8)	171쪽
리베르스쿨	1910년에는 국권마저 강탈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	158쪽
천재	1910년 대한 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178쪽
미래엔	한국을 강제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178쪽
비상교육	군대를 해산하고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빼앗은 일본은 대한 제국을 강제로 병합하였다(1910.8).	179쪽
지학사	일본은 1910년에 대한 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179쪽
금성	이러한 노력들은 일제의 국권 피탈(1910)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159쪽

한국 교과서는 ‘강제’, ‘강탈’, ‘피탈’ 등으로 병탄조약의 강압성을 표현하고 있으나 일본에 의한 한국병탄은 그 절차와 과정에서 강압성과 불법성이 큰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 ‘식민지’라는 용어는 3개 출판사에서 쓰여졌고 4개 출판사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제국주의시대의 식민지 개념에 대해 명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병합’이라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출판사가 4개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병합은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는 과정에서 강압성은 배제하되 기업과 기업 사이의 합병처럼 대등한 인식의 단어를 피하고자 만들어 낸 용어인 만큼 ‘한국병합’, ‘한일병합’, ‘한일합방’ 등의 용어는 지양해야 하며 반드시 ‘한국병탄’으로 표기해야 한다.³⁴⁾

34) 한철호, 『근대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병탄(併呑) 했나』, 독립기념관, 2016.

V. 맺음말

본 연구는 2022년 현재 한일 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근대 한일 관계를 규정한 여러 조약들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양국 청소년의 역사인식의 단면을 파악한 것이다. 근대 이후 국제법에 따른 국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조약의 중요성은 차치하더라도 한일 양국이 상호 체결한 조약은 대체로 개국조약, 침탈조약, 병탄조약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조약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침략 행위였음이 역사적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련의 조약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한일 양국이 상당히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정리한 양국 교과서의 조약 서술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은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최초로 불평등 체제에 포섭되었다. 이의 불평등성을 인지한 일본은 조약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불평등한 조약을 한국에 강요하였다. 일본 교과서는 자신들의 불평등조항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불평등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강요한 조일수호조규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피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또 한국 교과서의 경우 조일수호조규라는 명칭보다는 ‘강화도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조약의 불평등성을 조약의 조항을 제시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둘째, 침략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과 포츠머스조약에 대해 일본 교과서는 이를 분명히 다루고 있는 반면 두 조약의 배경이 되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모두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과서의 경우 피상적으로만 언급할 뿐 세부적인 사실과 의미를 언급한 교과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을사늑약의 경우, 일본 교과서는 조약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언

급한 교과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한국 교과서는 모든 교과서가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통해 조약의 강압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병탄조약의 경우, 일본 교과서는 모두 '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의 일부 교과서도 '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병합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의 사용을 지양하고 '병탄'조약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양국의 중학교 교과서의 조약 관련 서술은 상당한 차이점이 보인다. 일본 교과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 조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의의까지 덧붙이고 있는 반면 한국 교과서는 일본 교과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면의 할애와 함께 용어 제시가 불충분하고 이의 개념 설명이 거의 없으며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강'의 흐름만 쫓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집필 경향은 한국 중학교 교과서 서술지침의 '대강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등학교 근대사에서 많은 부분 보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 전개보다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 것인가라는 역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라도 한국과 직접 관련이 되면서 한국 근대사 흐름에 반드시 필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2.07.04. 투고 / 2022.08.01. 심사완료 / 2022.08.11. 게재확정)

[Abstract]

A Comparison on the Description of Modern Treaty in Korean and Japanes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Choi, boyoung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how Korea described the treaties signed with Japan during the modern period, focusing on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Korea and Japan. Korean textbooks describe more briefly than specific explanations according to the “roughly” guidelines of the curriculum, and Japanese’s show differences in quantity that try to comprehensively contain many contents. The Japanese textbooks specifically deal with the inequality of its founding treaties, but also describes the process of Chosun’s annexation as legitimate, referring to various treaties with Chosun. On the other hand, Korean textbooks have limitations in raising the inequality of the Ganghwa Island Treaty but not mentioning the Shimonoseki Treaty or the Portsmouth Treaty, directly related to the Korean colony. In addition, the description of the Japan–Korea Treaty of 1905 and the Japan’s Annexation Treaty seems to be clearer.

□ Keyword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Korea-Japan Treaty, Shimonoseki Treaty, China-Japan War, Portsmouth Treaty, Eulsa Treaty, Annexation Treaty

[참고문헌]

- 도쿄서적, 『新しい社會 歴史』, 2020.
- 제국서원, 『中學生の歴史』, 2020.
- 교육출판, 『中學社會 歴史』, 2020.
- 일본문교출판, 『中學社會 歴史』, 2020.
- 이쿠호샤, 『新しい日本の歴史』, 2020.
- 야마가와출판, 『中學歴史』, 2020.
- 마나비샤, 『中學社會 歴史的分野』, 2020.
-
- 비상출판사, 『중학교역사 2』, 2021.
- 동아출판, 『중학교역사 2』, 2021.
- 미래엔, 『중학교역사 2』, 2021.
- 천재교육, 『중학교역사 2』, 2021.
- 금성출판사, 『중학교역사 2』, 2021.
- 지학사, 『중학교역사 2』, 2021.
- 리베르스쿨, 『중학교역사 2』, 2021.
-
-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일 조약 자료집(1876~1910)』, 동북아역사재단, 2020.
- 김도형,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 한일관계와 조약’ 서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2010.
- 김홍수, 「일본 역사교과서의 강화도조약 기술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35, 2012.
- 서현주 「학습지도요령해설 개정과 2011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근대사 관련 서술 -일본의 개국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역사교육논집』 13, 2011.

- 엄태봉, 「2020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 분석」, 『比較日本學』 49, 2020.
- 최영호, 「2011년 검정통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근대 서술에 나타난 변화와 특징」, 『한일관계사연구』 40, 2011.
- 최상훈, 「역사교과서 검정 준거자료의 구속력과 집필자의 자율성」, 『역사와 교육』 28, 2019.
- 현명철,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
- 현명철, 「개항기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의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30, 2008.
- 현명철,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근대사 기술」, 『한일관계사연구』 69, 2020.